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 2021-417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10조의3,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0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수입 농산물 등의 원산지 둔갑 차단 등 효율적인 유통관리를 위해 '22년 1월부터 관세청으로부터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이관받아 추진할 계획이며,
-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지정기준, 심의위원회 설치, 유통이력 신고내용·방법·절차, 조사 등

2. 주요내용

-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지정기준 등 마련(안 제3조~안 제4조)
 - 공정거래 또는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농산물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 규정
 - * 위해성이 입증되거나, 비식용을 수입한 후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수입 후 거짓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 농산물 등

- 유통이력관리 심의위원회를 통해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지정하고, 지정기한은 3년의 범위내로 하되 필요시 연장

□ 유통이력관리 심의위원회 설치(안 제5조)

- 유통이력관리 수입농산물등을 심의·지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근거 마련
 - * 위원장(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식생활소비진흥과장 외 필수위원 2, 전문가위원 4명 이상)

□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안 제6조)

-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 신고(전자적 신고 포함)해야 함
 - * 신고내용: 양수자의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소, 양도중(수)량, 양도 일자,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양도한 농산물등에 대해 수입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리기 위하여 거래명세서 또는 수입신고필증 등 교부

□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등 조사(안 제8조)

- 조사공무원이 유통이력신고의무자 사업장에 출입하여 영업 관계장부나 서류를 열람하는 조사항목 등을 규정
 - * 수입유통이력 신고누락, 거짓신고, 원산지 거짓표시 및 용도 외 사용 등 위반 여부 조사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2월 28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진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1) 전자우편(이메일) : hong2347@korea.kr, jtl1238@korea.kr
-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진흥과
- 3) 팩스 : 044-868-0461
- 4) 전화문의 : 홍찬호 사무관(044-201-2276), 정성혁 주무관(044-201-2277)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소비진흥과), 044-201-2276, 227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10조의3,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이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을 말하며, 수입통관 후 재포장·분할 포장·단순가공(재포장, 소분, 선별, 구분, 분쇄, 세척, 건조, 냉장, 냉동, 단순혼합, 단순절단, 단순가열 등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을 준용)을 거쳐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의무가 부여되는 경우에는 그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다만, 자가 사용목적, 휴대반입, 수출 후 재수입 농산물 등은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으로 보지 않는다.
2. “유통이력”이란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수입 이후부터 소비자 판매 이전까지의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말한다.
3. “수입업자”란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수입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사무소장(이하 “관할 지원·사무소장”이라 한다)에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4. “유통업자”란 수입업자로부터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양도받아 도매 또는 소매하는 자를 말하며, 도매·소매 또는 도매·소매·소비를 겸하는 자도 유통업자로 본다. 이 경우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다른 유통업자 또는 최종소비자에게 양도하는 자도 유통업자로 본다.
5. “소매업자”란 유통업자 중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자를 말하며,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사용하는

제조공장(단순가공 제외)이나 음식점 등 소비처도 소매업자로 본다.

6. “유통이력신고의무자”란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수입업자와 유통업자를 말한다. 다만, 소매업자는 수입농산물등의 유통이력신고의무자에서 제외한다.
7. “양도자”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도매·소매 또는 도매·소매·소비를 겸하는 유통업자에게 판매한 자를 말한다.
8. “양수자”란 양도자로부터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구매한 자를 말한다.
9. “관할 지원·사무소장”이란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의무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의 기관장을 말한다.
10. “조사공무원”이란 법 제10조의3에 따라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관리를 위하여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통하여 조사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11.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란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수입통관에서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과정을 추적·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2. “식용”이란 인간이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물질로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13. “비식용”이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업용, 화장품 제조용, 의약품 제조용 등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지정기준) ①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1. 관계 전문기관 등에 의해 위해성이 입증된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
2. 외국에서 위해성이 입증되어 수입 후 국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

3. 비식용 등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후 식용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여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
4. 수입 후 거짓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방법 등으로 소비자 및 생산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등 공정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
5. 그 밖에 사회안전·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시급하게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

제4조(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농산물 중에서 사전에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심의위원회를 통해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 품목은 별표1과 같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제5호에 따라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지정기한은 3년의 범위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유통이력 관리 심의위원회) ①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유통이력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진흥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장
2.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 원예산업과장,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 중 1명 이내
3. 농업분야 연구기관 및 공기업, 농업 생산단체, 소비자단체, 한국관세

사회, 농업 관련 대학 등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하는 임·직원, 회원, 교수 등 4명 이상

- ⑤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 및 위원은 자기의 이해관계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석하거나 의결하지 못한다.

제6조(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 ①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양도하는 경우(양수자가 재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에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에는 양도 첫날과 토·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양수자의 상호(성명)
 2. 양수자의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다만 양수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소매업자(차량판매상, 노점상 등) 또는 개인일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3. 양수자 주소
 4. 양도 중(수)량
 5. 양도 일자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②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신고가 곤란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서를 관할 지원장·사무소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받은 관할 지원장·사무소장은 신고내역을 즉시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③ 유통이력신고의무자인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양도한 농산물등에 대해 수입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리기 위하여 거래명세서 또는 수입신고필증 등에 별표 2의 내용을 인쇄하여 부착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의무 통지서를 방문, 우편, FAX,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유통이력신고의무자로서 동일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 하에 다수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때에는 주된 사업장 관할 지원장·사무소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 동일사업자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일괄하여 유통이력신고를 할 수 있다. 이때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⑤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 대상 농산물등을 일반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 5일 단위로 판매량을 합계하여 1건으로 신고할 수 있다.
- ⑥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장부 기록·보관 등) ①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거래명세서, 수입신고필증 등 유통이력 관련 자료를 비치하고, 양수자 상호·양수일자·양수수량(중량) 및 양도자 상호·양도일자·양도수량(중량)등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②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관련 거래명세서 등의 증명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조사) ① 조사공무원은 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신고의무자 사업장에 출입하여 영업 관계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조사는 소매업자를 포함한다.

1. 수입유통이력 신고누락 여부
 2. 수입유통이력 거짓신고 여부
 3. 원산지 거짓표시 및 용도 외 사용 등 위반 여부
 4. 수입유통이력내역 기록보관·관리 여부
 5. 유통이력 신고 대상임의 통지 여부 등
- ② 유통이력신고의무자와 소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장부 열람 또는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공무원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조사과정에 해당 사업장 대표자, 소유자 등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 ④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1-000호, 2021. 00. 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에 따른 신고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대상품목(제4조제1항 관련)

1. 양파(신선·냉장)

< 지정기간: 2021.2.1 ~ 2022.7.31 >

연번	종 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양파 (신선·냉장) 껍질을 벗긴것	0703.10-1010	Onions(Fresh or Chilled)	
2	양파 (신선·냉장) 기타	0703.10-1090	없음	

2. 도라지

< 지정기간: 2021.8.1 ~ 2022.7.31 >

연번	종 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도라지	0706.90-4000	없음	
2	건조한 도라지	1211.90-1960	없음	

3. 냉동마늘

< 지정기간: 2021.2.1 ~ 2022.7.31 >

연번	종 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냉동마늘	0710.80-2000	Garlic(Frozen)	

4. 냉동고추

< 지정기간: 2021.2.1 ~ 2022.7.31 >

연번	종 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냉동고추	0710.80-7000	Frozen Fruits of the genus Capsicum	

5. 팥

< 지정기간: 2021.8.1 ~ 2022.7.31 >

연번	종 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팥	0713.32-9000	Small Beans	

6. 건고추

< 지정기간: 2021.8.1 ~ 2022.7.31 >

연번	종 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건고추	0904.21-0000	Dried Red Pepper	

7. 콩(대두)

< 지정기간: 2021.8.1 ~ 2022.7.31 >

연번	종 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콩(대두)	1201.90-9000	Soybean	

8. 땅콩

< 지정기간: 2021.8.1 ~ 2022.7.31 >

연번	종 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땅콩 (꼬투리를 벗긴 것)	1202.42-0000	Ground-nuts, shelled	
2	땅콩 조제품	2008.11-9000	Roasted Ground-nuts, shelled Roasted Ground-nut, peeled Roasted Ground-nut, peeled(half or crush or powder)	

9. 참깨분

< 지정기간: 2021.8.1 ~ 2022.7.31 >

연번	종 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참깨분	1208.90-9000	Sesame Powder	
2	볶은 참깨분	2008.19-3000	Roasted Sesame Powder	

10. 황기: 식품용

< 지정기간: 2021.8.1 ~ 2022.7.31 >

연번	종 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황기	1211.90-1999	Astragalus membranaceus Bunge(edible)	

11. 당귀: 식품용

< 지정기간 : 2021.2.1 ~ 2022.7.31 >

연번	종 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당귀	1211.90-1999	Angelicae gigantis Radix (Angelica gigas Nakai)(edible)	

12. 지황: 식품용

< 지정기간 : 2021.2.1 ~ 2022.7.31 >

연번	종 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지황	1211.90-1999	Rehmannia glutinosa Liboschitz(edible) (Rehmannia glutinosa Var.purpurea, Rehmanniae Radix)	

13. 작약: 식품용

< 지정기간 : 2021.2.1 ~ 2022.7.31 >

연번	종 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작약	1211.90-1999	Paeonia lactiflora Pallas 또는 기타 동속 근연식물(작약과 Paeoniaceae)의 뿌리(edible)	

14. 김치

< 지정기간: 2021.8.1 ~ 2022.7.31 >

연번	종 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김치	2005.99-1000	Kim-chi®	

별표 2 <제6조제3항 관련>

본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은 유통이력관리 신고대상 농산물등으로, 양도 후 5일 이내에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하거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제6조제2항 관련>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서									
신고자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수입농산물 내역	수입신고번호			수입신고수리일자 (수리전반출일자)			. . .		
	품명			원산지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에 판매한 내역									
양도 (판매) 내역(I)	업태	업체명	사업자 번호	우편 번호	주소	전화 번호	거래량 (kg,개)	양도 일자	사유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업체(차량판매상, 노점상) 또는 개인에게 판매한 내역									
양도 (판매) 내역(II)	업태	성명	차량번호	전화번호	거래량(kg,개)	양도일자			
	※ 업태는 차량판매상, 노점상, 개인으로 구분하여 신고(개인은 차량번호 미기재)								
<p>「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입농산물 유통이력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고일 :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고자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사무소장) 귀하</p>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작성요령

- 양도 후 5일 이내에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5일)은 판매 초일,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고 계산
- 양수자 유형(업태) : 유통업자, 소매업자, 최종소비자, 손실량, 수출
 - 유통업자 : 도매업체, 도·소매 병행업체, 단순가공업체
 - 소매업자 : 유통업자 중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업체와 제조공장(단순가공 제외)이나 음식점 등 소비자
 - 최종소비자 : 최종적, 실제적 소비자인 개인 등
 - 손실량 : 거래 사유란에 부패, 자가소비, 수분감량, 제조과정감량 등
 - 수출 : 수입농산물 재수출하는 경우(업체명(해외수입자명), 거래량, 수출일자, 사유란에 수출신고번호 기재)
 - * 소매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차량판매상, 노점상, 최종소비자 중 개인은 양도(판매)내역(II) 양식으로 신고
- 유통이력신고의무는 수입업자와 유통업자에만 있으며 소매업자, 최종소비자는 신고의무가 없음
- ※ 수입농산물 내역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기재하며, 양도(판매)내역은 별지에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유통이력신고의무자(수입업자, 유통업자)는 유통이력대상농산물을 일반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 경우 5일 단위로 판매량을 합계하여 1건으로 신고할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제6조제3항 관련>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 의무통지서						
수입 농산물	수입신고번호		신고수리일			
	양도자		거래일자			
	양수자		총거래량			
	번호	품명	세번부호	원산지	수량(중량:KG)	
안 내 사 항	<p>① 본 물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대상 물품으로 양도 후 5일 이내에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하거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p> <p>② 단순가공 여부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에 해당하는 가공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p> <p>③ 물품 구매자(양수받는 자)가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12호(소매업자) 및 최종소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자(양수자)에게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24px; margin-bottom: 10px;">년 월 일</div> <div style="text-align: left; font-weight: bold; font-size: 18px;">양수자(업체) 귀하</div>						

별지 제4호 서식 <제9조제1항 관련>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위반사실 확인서					
조사내역	조사일시			조사장소	
	소재지				
확인자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위반내역	위반종류	<input type="checkbox"/> 미신고 <input type="checkbox"/> 거짓신고 <input type="checkbox"/> 장부 미비치 <input type="checkbox"/> 신고대상 미통지			
	품명·규격		중(수)량		원산지
	위반내용				
본인은 상기 조사장소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3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미신고, 거짓신고, 이력신고 장부 미비치, 신고대상 미통지)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주소: 업체명: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조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